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황종우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해양사고,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,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 도입(안 제12조)

나.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하여 명시(안 제23조)

다.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구체화하여 명시(안 제2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24. ~ 10. 6.) 예정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”를 “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(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시 받는 면허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.

4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는 경우로서 해양사고, 천재지변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시설이 파손되었으나 일정한 기간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시설복구의 기한 및 방법

나. 파손된 시설이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해양심층수 취수 제한

다. 시설복구 진행상황의 보고 및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협조

라. 그 밖에 시설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있는 자”를 각각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해양환경,
수질환경 또는 식품위생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

제29조제4항 본문 중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납부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
중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”로, “기한 내에”를 “기한까지”로, “납부하
여야”를 “납부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2조(면허조건)</u>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</u>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 1~3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12조(면허조건)</u> ----- ----- -----<u>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</u>(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시 받는 면허를 포함한다)-----. 1~3. (현행과 같음) 4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는 경우로서 해양사고, 천재지변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시설이 파손되었으나 일정한 기간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<u>가. 시설복구의 기한 및 방법</u> <u>나. 파손된 시설이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해양심층수취수 제한</u> <u>다. 시설복구 진행상황의 보고 및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협조</u> <u>라. 그 밖에 시설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</u>
4. (생략) 제23조(품질관리인) ① (생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제23조(품질관리인) ① (현행과 같

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해양조사산업기사, 해양환경기사,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,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.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에서 해양심층수학, 해양학, 수산학, 환경공학, 화학, 미생물학,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·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. 해양환경행정,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29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③ (생략)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	음) ② ----- ----- 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는 사람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는 사람 3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해양환경, 수질환경 또는 식품위생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29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----- 납부
해야 ----. ---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----- 기한까지 -

-- 납부해야 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	
연 락 처	(051) 773 - 5245